

투자일임 계약서(국내주식형 공통)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자산운용(주)(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는 공단의 유가증권투자자금(이하 '계약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공단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계약상대방은 공단의 계약자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은 계약상대방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료를 지급한다.

제2조 (투자대상) 계약상대방이 공단의 계약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1.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2. 신주인수권증서 등 주식 관련 증권
(기초가 되는 주식은 1호의 것에 한정한다)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4. 증권거래소 및 한국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예금, Call, 발행어음, CD 등
6. 기타 공단과 계약상대방이 사전 합의한 유가증권(별지 「위탁투자지침」이 적용하는 유가증권 등)

제2조의1 (투자전략) 계약상대방은 공단의 계약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재무적 분석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투자 의사 결정 시 ESG 이슈 등을 고려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준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2. 투자 대상 종목에 대한 ESG 등급 평가를 통하여 ESG 등급이 높은 기업 또는 향후 ESG 등급 개선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제3조 (투자일임의 범위) 공단은 계약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임하고 계약상대방은 공단을 위하여 투자를 행한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유가증권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7.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투자지침」이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계약상대방이 공단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공단의 계약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일임서비스
2. 공단의 계약자산운용과 관련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공단의 계약자산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4. 기업탐방 및 IR 등에 대한 공동참여 기회 제공
5. 시장전략, 자산배분 전략에 대한 상시적 자문 제공
6.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상시적 자문 제공
7.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등에 관한 상시적 자문 제공
8. 기타 계약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투자일임수수료)

- ① 공단은 계약상대방이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본 계약서의 별지 “투자일임 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제22조의 투자일임수수료를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한다.
- ② 투자일임 기본보수(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월력을 기준으로 매 분기말로 하고 지급시기는 계약 해지 시 또는 매 연도말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성과보수(수수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지급한다.
- ③ 투자일임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손실률이 “위탁투자지침 제3조 4항의 위험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 직전수수료 계산기간 종료일로부터 해지 또는 만료시점까지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투자일임수수료 지급 시 위탁투자지침 제3조 9항과 관련 연간 매매회전율을 초과하거나 거래증권사 총수수료가 위탁자산 NAV의 연간 1.0%를 초과할 경우 각 한도를 초과한 총 수수료 금액만큼 투자일임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공단은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제6조 (계약상대방의 신의성실의무) 계약상대방은 공단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공단의 의사 등 사전파악) 계약상대방은 공단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단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공단의 의사(본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를 계약자산 운용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 (운용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 ① 계약기간동안 계약상대방은 공단에게 분기 1회 이상 계약자산의 운용계획 및 운용성과 보고서를 사전에 직접 대면하여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우편 등 통신을 이용하여 제출, 설명할 수 있다.
- ② 운용성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잔고 현황은 제21조의 자산보관수탁회사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1. 종목별 매매거래 내역
 2. 운용결과 평가 : 계약자산 총 수익률, 보유자산별 수익률과 보유비중 등
 3. 종목별 현황 : 종목별 잔고, 단가, 수량, 수익률, 보유비중 등
 4. 증권사별 거래내역(비중, 수수료금액 등), 조직 및 인력의 주요 변동사항 등
 5.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간에 정한 사항
- ③ 계약기간동안 공단과 계약한 펀드평가회사가 펀드운용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계약 상대방은 반드시 제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투자일임담당자 선정과 변경)

- ① 계약상대방은 공단의 계약자산을 운용할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팀제 운용 또는 공동 운용의 경우에도 주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주담당자가 운용에 관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방은 공단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의견 및 계약자산 내용과 규모 등 사전 조사된 공단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방이 공단에 대한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단의 사후 동의를 얻어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 ① 공단은 계약상대방이 투자일임업무 수행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대방의 투자 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공단의 투자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 ③ 계약상대방이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통지의무)

- ① 공단은 수탁관리회사의 점포 및 구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계약상대방의 투자 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에 의하여 공단에게 하는 통지는 제22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로 한다. 다만, 공단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용결과의 귀속) 계약상대방이 계약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공단에게 귀속되며, 공단과 계약상대방간의 수익률 보장 약정 등은 효력이 없다.

제13조 (계약상대방의 금지사항)

- ①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계약자산으로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4. 계약자산에 관한 정보를 계약상대방의 고유자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금지되는 행위
- ② 계약상대방은 계약상대방 또는 계약상대방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이나 투자자문자산을 매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계약상대방이 위임받을 수 없는 행위)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공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매매거래보고서를 공단을 배제하고 계약상대방만이 수령하는 행위
5. 금융기관 등에 거래계좌개설을 대행하는 행위

제15조 (계약의 유효기간)

- ① 계약 체결일은 공단과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 한다.
- ② 계약의 유효기간은 공단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공단 또는 계약상대방은 제15조의 계약기간 중에도 3일전에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통지(팩스전송 포함)로 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방이 공단으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전달받은 경우 계약상대방은 투자일임매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이 본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계약상대방의 위탁자산 운용결과 「위탁투자지침」이 정하고 있는 “계약자산의 펀드수익률이 위험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공단은 즉시 계약상대방의 투자일임사항을 정지시키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단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이 변경 또는 해지된 경우, 투자일임수수료는 별지 “투자일임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 ⑤ 공단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이 경우 공단의 해지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⑥ 공단의 계약변경(해지포함)의 의사가 계약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까지 계약상대방이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결과는 공단에게 귀속된다.

제17조 (위탁투자지침 준수 및 위험관리 책임의 강조) 공단의 「위탁투자지침」과 제2조(투자대상) 및 제13조(계약상대방의 금지사항)의 계약내용을 위배한 결과 발생하는 운용부실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있다.

제23조 (계약위반의 효과)

- ① 공단 또는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공단 또는 계약상대방이 이 계약 또는 「위탁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부수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대방은 자본시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관련조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계약상대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공단과 계약상대방은 위의 각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단)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회 사 명 : 공무원연금공단
이 사 장 : (인)

계약상대방) 주 소 :
회 사 명 :
대표 이사 : (인)

투자일임수수료 등에 관한 기준

| 운용유형 | | 기본보수 | 성과보수 | 총보수한도 | Hurdle Rate | 평가기간 |
|-----------|-----|--------|---------------------|------------------------|-------------------|-------------|
| 국내 주식형 | 배당형 | 30bp이내 | Hurdle 초과수익의 10% | 연평균 NAV의 60bp 이내 | Max {BM+3%,3%} | 해당연도 수익률 |

1. 수수료 지급 방법

○ 기본보수(수수료)는 계약 해지 시 또는 매 연도말 의 영업일에 지급한다.

- 기본보수 = $\sum(\text{위탁자산 순자산가치(이하 "NAV")의 일 잔액} \times \text{기본수수료율}/365)$
 ☞ 매일의 보수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운용일수만큼 합한 금액

○ 성과보수(수수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분기 이내에 지급한다.

- 성과보수 = $(\text{위탁자산 연평균 NAV} \times \text{Hurdle Rate 초과수익률}) * 10\%$
- 성과보수 지급대상 : 평가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위탁운용한 펀드
- 성과보수 평가기간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성과보수 지급조건 : 평가기준일(매 연도말) 위탁자산 시간가중수익률이 Hurdle Rate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경우 Hurdle Rate 초과수익의 10%
 - Hurdle Rate : {BM+3%, 3%} 중 큰 값 적용

(기준수익률은 상품 유형별 배당반영 수익률을 적용)

다만, 평가기준일 위탁자산 NAV에서 성과보수 산정금액 차감액이 투자원금 가치보다 적은 경우 {성과보수 산정액, (평가기준일 위탁자산 NAV-성과보수 산정액-투자원금)} 중 적은 금액을 성과보수 수수료로 지급

- 최근 1년(성과평가 기준연도 상반기 및 하반기 평가결과) 정기 위탁운용사 평가결과 'D' 등급을 받은 위탁운용사는 해당 유형 상품에 대하여 성과보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총보수(기본보수와 성과보수의 합)의 지급한도는 연평균 NAV의 60bp 이내로 한다.

○ 수수료 계산 시 금 일천원 미만은 절사함

2. 중도해지 시 수수료 지급 방법

- 중도해지 시 수수료는 최근 분기 말일로부터 해지효력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계약유지일수로 하여 일할 산정한다.